



Grant Thornton

An instinct for growth™

무역, 조세 및 사회보험 정책에 대한 변경

2014년 12월 16 일



무역

상공부의공문 No.42/2014/TT-BCT은 2014년 11월 18일에 발급해서 공문No. 21/2010/TT-BCT의 2010년 5월 17일에 발급중의 일부조항 보충, 변경을 함으로서 ASEAN 상품무역 협정중 “C/O” 출처 규정을 집행한다

공문No.42/2014/TT-BCT 의 일부 변경은 2015년 01월 02일부터 발효에 주목해야할 점들은 다음:

- 공문 No. 21/2010/TT-BCT 에 같이 발급된 구체규칙의 상품 List의 부록 2 삭제해 해서 상공문과 발급된 부록I 으로 대신한다. 새로운 부록 I 은 2012년 개편된 양식으로 상품에 대한 조화적인 설명과 Code의 System 에 의거해 작성하기 때문에 문서 No. 21/2010/TT-BCT중의 2007년 도에 사용된 개편양식 보다 일부 변경들이 있다
- 문서 No.21/2010/TT-BCT 에 같이 발급된 방적- 봉 재 상품에 대한 기본 전환 기준들의 부록3 을 삭제해서 본 문서와 삽입된 부록II로 대체한다. 문서No. 21/2010/TT-BCT에 삽입된 C/O 증명서발급 및 검사 절차에 대한 부록 7내용 의 일부 변경, 보충을 다음처럼 한다:
 - C/O 증명서발급은 수출 시점 전에, 혹은 그후 짧은 시간 에 수출 성원국가 부터 상품의출처가 있는 확정으로 하는 부록1처럼 출처규정에 따르면 발급된다
 - 수입 통관 절차를 한 시점에 세관 우대를 수혜하기 위해 수입자는 수입국 세관조직에 수입Form, C/O 및 증빙서류 (예. Invoice, Transport List는 성원국가 아닌 하나이나 여러 국가의 경로를 통과한 문건의 경우에 수출 성원국의 발급된 계속운송의 List 이다)들을 제출해 주어야 한다. 또한 수입 성원국가의 법규에 따른 기타서류도 제출한다

- D form의C/O 와 back to back D form 의 C/O 엔 상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 21/2010/TT-BTC 의 부록1의 제5 조 에 규정된 공식으로 계산된 RVC 기준을 사용한경우에 오직 FOB 가치만 기록한다

단. D form의C/O 와 D form 백투백 C/O 은 Cambo dia 와 Myanmar 부터 도착 및 출발 발급인 경우에 2년간 동안 즉 2014/4/01일 부터 1016/3/ 31일 까지의 출처 각 기준 에 대한 FOB 가치를 그냥 반영한다

- 문서 No. 21/2010/TT-BTC의 근거로 발급 된 D form C/O 의 부록 8를 삭제하고 본 문서와 삽입된 부록 III로 교체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C/O Form를 발급한다
- 문서 No.21/2010/TT-BCT 와 삽입된 C/O 발급조직 List 의 부록 13을 삭제하고 본 문서와 삽입된 부록 IV로 교체되고 그에 따른 C/O 발급을 가능한 일부조직들의 보충을 한다.

본 문서는 문서 No. 24/2012/TT-BCT 의 2012년 9월 17일에 발급을 폐기한다.

조세

조세 각법규의 일부 조항 변경, 보충의 법규 No. 71/2014/QH13 에 대하여

법규No. 71/2014/QH13 는 2015 년1 월1 일 부터 발효되고 주목해야 할 일부 변경들이 다음 같다 :

법인세 (“CIT”)

- 법인세 계산시 공제된 광고비 및 판촉비를 제한 기준을 취소한다
- 발전우대 지원의 공업상품 List에 속하는 새로운 상품 생산 투자를 위한 제안진행 부터 회사의 수익은 다음 기준 중 1로 만족한다 :
 - 첨단기술(High Tec.)법규의 규정에 대한 첨단기술에 지원해준 공업상품
 - 방적-봉재, 피혁- 구두, 전자- IT, 자동차 조립- 생산,기계 제작분야의 상품생산에 지원해준 공업상품; 그러나 그 상품들이 2015년 01월 01일 까지 국내에 생산되지못 하거나 생산되었 지만 EU 기술수준 혹은 그와 비슷한 수준을 만족 해야한다 .

개인소득세 (“PIT”)

- 증권 양도가치의 0,1% 세율기준 만으로 적요하고 종전 세금계산의 2방법을 대신해준다. 증권 양도로서 수익 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결산하지 않다

- 부동산양도에 대한 매번 양도가치의 2% 세율을 적용하고 종전 세금계산의 2 방법을 대신한다.

부가가치세 (“VAT”)

- 3개의 상품 Group에 대한 VAT 5% 세 부과를 면세대상으로 바꿔준다. 즉 비료; 가축, 가금, 양식 동문 ; 농업용 전문화 기계, 설비들이다.

세무 관리

- 외화로 된 매출금, 비용, 세금계산 가치금의 경우 혹은 외화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국가 공관의 VND으로 납세허락을 받으면 발생 실시점의 외화를 VND거래 환율로 계산해야 한다
- 세금지연 의 과료는 납세지연금액의 0,05%/하루 의 한기준만 적용한다.

앞으로 정부는 상기의 규정들을 세부적 시행안내를 위한 공문을 발급할때 우리 GTV(주)는 귀사들에게 아려드리겠다.

보험

HCMC의 사회보험공관의 문서No. 3780/BHXH-THU - 2014년 11월 28일로 지역별 최저임금의 근거로 보험 가입 안내에 대하여

정부령 No.103/2014/ND-CP의 2014년 11월 11일 발급에 따라 노동계약의 근거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 임금기준의 적용을 2015년 1월 1일부터 규정 한다:

- 지역 I: 3.100.000 VND/ 월
- 지역II: 2.750.000 VND/ 월
- 지역 III: 2.400.000 VND/ 월
- 지역 IV: 2.150.000 VND/월

그 임금을 통해서 사회보험 기관은 고용자가 보후-사회-노동조직과 등록된 봉급 List, 호봉 표에 최저 임금기준을 재검토해서 다시 적당한 조정을 해주고 새로운 지역별 최저 임금보다 낮지않는 원칙으로 해준다고 권한다

그 근거상에 계약서의 월급, 요금을 다시 조정해서 당사의 봉급List, 호봉표에 맞는 매 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해준 근거로 2015년01일 부터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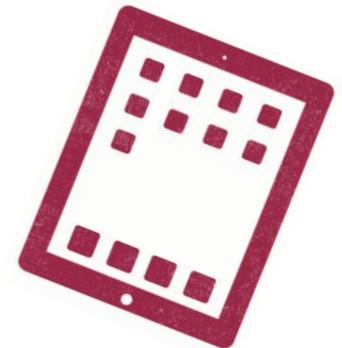
그외엔 각회사들은 다음 추가적 주의를 필요하다:

- 근로자의 봉급, 요금에 대한 조정 문서 (결정서 혹은 계약 부록서 등..)는 기초서류 (original)로서 상기정부령에 따른 보험 필수가입을 하는 임금 조정의 대상자들에 대한 필수 보험가입 및 수혜금 기준과 대비한 근거이다

- 늦어도 2015년 2월 20일 까지 노동고용의 각 회사는 노동자에 대한 필수 보험가입의 임금기준을 조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 윗 기한에 서류제출을 하지않으면 규정에의한 발생 이자 를 책임해야 한다

상기 지역별 최저임금기준을 조정하지않거나 늦게해서 노동자들이 새 최저임금기준 보다 낮은 임금이 있는 사정이면 사회 보험기관이 지역별 최저임금의 기준과 같게 보험 가입임금을 임시적으로 조정 계산한다.

- 노동자는 노동계약을 HCMC의 본사 혹은 지점에 계약했지만 다른 지역에 근무한다면 계약서에 명기된 근무 지역의 최저 임금기준을 적용해서 임금을 조정해주고 그에 근거로서 보험 가입 및 수혜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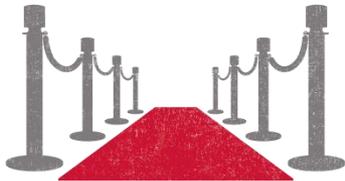
연락처

본 소식통의 정보들이 통보시점 전까지 효력이있는 법규 각종 문서부터 요약 하거나 종합한다. 우리GT Vietnam의 능력과 노력으로 상기의 소식통내용들이 관련 회사들에 유익적 참고목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한다. Grant Thornton (VietNam) 은 본 소식 통의 잘못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용하는 과정에 관련된 정보들을 사용하시려면 참고목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한다.

본 소식통에 관련된 정보들을 사용 하시려면 우리의 다음 Web에 검색필 :

www.gt.com.vn

Mr. VINH : 한근 번역



Văn phòng Hà Nội

Tầng 18, Tòa tháp Quốc tế Hòa Bình
106 Hoàng Quốc Việt
Quận Cầu Giấy, Hà Nội
Việt Nam
ĐT + 84 4 3850 1686
F + 84 4 3850 1688

Hoàng Khôi

Partner Tư vấn thuế
M +84 4 3850 1618
E Khoi.Hoang@vn.gt.com

Nguyễn Đình Du

Partner Tư vấn thuế
M +84 4 3850 1620
E Du.Nguyen@vn.gt.com

Kaoru Okata

Giám đốc - Khách hàng Nhật Bản
M +84 4 3850 1680
E Kaoru.Okata@vn.gt.com

Phạm Ngọc Long

Giám đốc Tư vấn Thuế
M +84 4 3850 1684
E Long.Pham@vn.gt.com

Kiều Hoài Nam

Trưởng phòng cấp cao Tư vấn Thuế
M +84 4 3850 1681
E Nam.Kieu@vn.gt.com

Văn phòng thành phố Hồ Chí Minh

Tầng 28, Tòa nhà Saigon Trade Centre
37 Tôn Đức Thắng
Quận 1, Tp. Hồ Chí Minh
Việt Nam
ĐT + 84 8 3910 9100
F + 84 8 3914 3748

Nguyễn Hùng Du

Partner Tư vấn thuế
M +84 8 3910 9231
E HungDu.Nguyen@vn.gt.com

Valerie – Teo Liang Tuan

Giám đốc Tư vấn Thuế
M +84 8 3910 9235
E Valerie.Teo@vn.gt.com

Tomohiro Norioka

Giám đốc - Khách hàng Nhật Bản
M +84 8 3910 9205
E Tomohiro.Norioka@vn.gt.com

Trần Nguyễn Mộng Vân

Trưởng phòng cấp cao Tư vấn Thuế
M +84 8 3910 9233
E MongVan.Tran@vn.gt.com

Nguyễn Bảo Thái

Trưởng phòng cấp cao Tư vấn Thuế
M +84 8 3910 9236
E Thai.Nguyen@vn.gt.com

Questions & feedback

